

「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」 개정안 사전예고

1. 규정 명칭

☐ 「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」

2. 개정 이유

☐ 국가유공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 강화 지원 등

3. 주요 개정 내용

☐ 「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^{선순위} + 특례보증자리론^{후순위}」 취급 허용 등

4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3년 11월 1일(수) 오전 09:00시 까지(도착기준)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, 24층(정책모기지부)
- 담당자(이메일) : 차장 김민석(1507@hf.go.kr)
- 전화번호 : 051-663-8293
- 팩스번호 : 0505-036-0465

붙임: 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. 끝.